

현장실습생 산재보험 적용 관련 Q&A

현장실습생 산재보험 적용의미

① 산재보험법 제123조 (현장실습생 특례적용) 규정의 의미는?

❖ 원칙적으로 현장실습생 중 근로자성*이 인정되지 않는 순수 현장실습생은, 4대보험 가입의무가 발생하지 않음

* 판례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자성을 판단

❖ 이에, 산재보험법 제123조는 근로자성이 없는 순수 현장실습생도 근로자와 동일하게 업무상 재해 위험에 노출됨을 고려하여

- 노동관계 및 사회보장 법령 중 생명·안전과 직결되는 산재보험법에 한해 현장실습생을 근로자로 의제(擬制)하여 산재보험 가입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임

② 산재보험법 제123조 (현장실습생 특례적용) 대상에 해당하는 현장실습생의 경우, 산재보험 외 다른 4대보험 가입의무 및 근로기준법 등 타 노동관계 법령 준수 의무도 발생하는지?

❖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순수 현장실습생은 산재보험법 제123조에 의거 산재보험에 한해서만 근로자로 의제되는 것이므로 다른 4대보험 및 노동관계 법령 준수 의무는 발생하지 않음

현장실습생 산재보험 적용범위

① 산재보험법 제123조 및 「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범위 고시」에 따라 산재보험이 당연 적용되는 '현장실습생' 범위는?

❖ 고교(일반계고, 특성화고), 대학(전문대학, 대학) 등 초·중등 교육법, 고등교육법상 학교에서 주관하는 '직업교육훈련이나 현장실습 수업 등'을 이수하고 있는 자

② 산재보험법 제123조 및 「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범위 고시」에 따라 산재보험이 당연 적용되는 '직업교육훈련이나 현장 실습수업 등'의 범위는?

❖ 고교 및 대학에서 시행하는 모든 현장실습*이 포함되나, 학원 등 그 외 교육훈련기관에서 시행하는 현장실습은 포함되지 않음

* 유급 여부, 실습기간 등 무관

❖ 업무 종사가 없는 단순견학*(observation), 전문자격 취득을 위한 필수요건에 해당하는 현장실습**, 해외에서 진행되는 현장실습은 제외

* 단순견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획서 등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이 확인

** 대학산학협력활동 조사(교육부)상 공시대상에서 제외되는 현장실습

< '대학 산학협력활동 조사' 공시대상 제외 현장실습 >

▲ 「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」에 따른 교육실습

▲ 「선박직원법 시행령」에 따른 승선실습

▲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에 따른 사회복지현장실습

▲ 「영양사에 관한 규칙」에 따른 영양사 현장실습

▲ 「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」에 따른 보육실습

▲ 「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ICT 인턴

▲ 의사, 간호사, 조종사, 해기사 등 전문자격 취득을 위한 실습

▲ 「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」, 「교통안전공단」, 「한국해양수산연수원」 등에서 시행하는 전문자격시험 등

③ '실습학기제'도 현장실습에 포함되는지?

❖ 포함, 실습학기제도 현장실습의 일환 (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, 교육부)

④ 중앙행정기관(소속기관 포함),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진행되는 현장 실습도 포함되는지?

❖ 포함, 산재보험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「공무원 재해보상법」 등 다른 법률에 의해 재해보상이 되지 않는 사업은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이므로 중앙행정기관(소속기관 포함),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이루어지는 현장실습도 포함

현장실습생 사용 사업장 신고 및 보험료납부 의무

① 현장실습생을 새로이 사용한 사업주 조치사항은?

❖ 일반 근로자를 새로이 고용한 사업주의 '고용신고'와 동일하게
(보험료 징수법 제16조의10제3항)

- 현장실습생을 새로이 사용한 사업주는 현장실습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현장실습생의 성명 및 주소지 등을 신고하여야 함

* 다만,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보험료징수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먼저 해야 함

❖ 현장실습생에 대한 고용신고 방법은 일반 근로자 고용신고와 동일

- 「고용·산재보험 토탈서비스(total.kcomwel.or.kr)」를 이용하거나 「근로자 고용신고서(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별지제22호의5서식)」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(지사)에 제출

• 「고용·산재보험 토탈서비스」를 통한 고용신고

- 01 사업장 → 민원접수/신고 탭 선택
- 02 고용관리 메뉴 선택
- 03 근로자고용신고(10501) 선택
- 04 사업장의 관리번호 선택
- 05 근로자고용신고내역 신청구분 '산재' 선택
- 06 보험료부과구분 부호 '산재만 부과' 선택 및 사유 '현장실습생' 선택
- 07 '월평균보수' 등을 입력한후 「접수」를 클릭하여 신고 완료

• 「근로자 고용 신고서」 제출을 통한 고용신고

- 01 '근로자 고용 신고서' 서식 준비(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'서식자료실' 참조)
- 02 산재보험 [√] 근로자 고용 신고서란 체크
- 03 고용보험·산재보험 보험료 부과구분 부호란에 '52-03' 기재
- 04 현장실습생 성명, 월소득액, 자격취득일 기재
- 05 신고인(대표자) 서명후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(지사)에 제출

② 현장실습기간 종료에 따라 더 이상 현장실습생을 사용하지 않게 된 사업주 조치 사항은?

❖ 일반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종료한 사업주의 '고용관계 종료신고'와 동일하게 (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제4항)

- 현장실습생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된 사업주는 현장실습이 종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현장실습생에게 지급한 일체의 금품, 현장실습 종료일 등을 신고하여야 함

❖ 현장실습생에 대한 고용관계 종료신고 방법은 일반 근로자 고용관계 종료 신고와 동일

- 「고용·산재보험 토털서비스(total.kcomwel.or.kr)」를 이용하거나 「근로자 고용종료신고서(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6서식)」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(지사)에 제출

• 「고용·산재보험 토털서비스」를 통한 고용관계 종료 신고

- 01 사업장 → 민원접수/신고 탭 선택
- 02 고용관리 메뉴 선택
- 03 근로자고용종료신고(10502) 선택
- 04 사업장의 관리번호 선택
- 05 근로자고용신고내역 보험구분 '산재' 선택
- 06 산재보험 '상실일' 등을 입력한후
- 07 '월평균보수' 등을 입력한후 「접수」를 클릭하여 신고 완료

• 「근로자 고용 종료신고서」 직접 제출을 통한 고용관계 종료신고

- 01 '근로자 고용 신고서' 서식 준비(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'서식자료실' 참조)
- 02 산재보험 [√] 근로자 고용 종료신고서란 체크
- 03 사업장 내용 기재
- 04 현장실습생 성명, 상실연월일 등 기재
- 05 신고인(대표자) 서명후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(지사)에 제출

③ 현장실습생을 사용한 사업장의 경우 '보수총액 신고'가 어떻게 달라지는지?

- ❖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모든 사업장은 매년 3월 15일까지 전년도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함 (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제1항)
- ❖ 전년도 현장실습생을 사용한 사업주의 경우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에 '현장실습생에게 지급된 훈련수당 등 모든 금품'을 합산하여 보수총액 신고를 하여야 함

④ 보수총액 신고 시 합산해야 하는 '현장 실습생에게 지급된 훈련수당 등 모든 금품'의 범위는?

- ❖ 명칭에 관계없이 현장실습의 대가로 현장실습생에게 지급한 일체의 금품을 의미
 - ❖ 사업주가 현장실습생에 지급한 일체의 금품을 모두 포함*하되 사업주 외의 자(학교 등)가 지급한 금품은 제외
- * 임금대장, 표준협약서에 기재된 훈련수당 금액 등을 통해 확인
- ** 사업주가 현장실습생에게 지급한 금품이 없는 경우 해당 현장실습생의 보수총액을 0원으로 신고

⑤ '무급 현장실습'의 경우,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가 있는지?

- ❖ 보험료 산정의 일반원칙(보험료징수법 제13조)에 따라 산재보험료는 "현장 실습생에게 지급된 훈련수당 등 모든 금품 × 업종별 보험료율" 이므로 사업주가 현장실습생에게 지급한 금품이 없는 경우 사업주가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는 0원임

사업주 신고·납부 의무 미이행 시 보상 및 제재

①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, 현장실습생 고용신고 등을 하지 않은 경우, 현장실습생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?

- ❖ 특례적용 대상인 모든 현장실습생은 사업주의 신고 및 보험료 납부여부와 무관하게 산재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있음

② 현장실습생에 대한 고용신고를 하지 않거나 보험료를 미납한 사업주에 대한 불이익이 있는지?

❖ 현장실습생을 사용한 사업주가 고용신고, 보수총액 신고 등을 하지 않아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재보험료가 체납된 상황에서 재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된 보험급여의 10%를 사업주에게 징수

* 단, 징수액 한도는 납부하였어야 할 보험료의 5배 이내

- 다만, 현장실습생 고용신고를 제 때 하지 못했더라도 보수총액 신고(매년 3월 15일) 시 전년도 현장실습생에게 지급된 일체의 금품을 포함하여 보수총액을 신고하여 보험료를 정산한 경우 보험료 체납으로 간주하지 않음

❖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*를 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현장실습생을 사용하다가 현장실습생에게 재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된 보험급여의 50%를 징수**

* 보험관계 성립신고는 현장실습생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산재보험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모든 사업장은 최초 근로자가 입사한 날부터 14일 이내 하여야 함

** 단, 징수액 한도는 납부하였어야 할 보험료의 5배 이내

보상범위·수준

① 현장실습생 산재 발생 시 보상범위 및 수준은?

❖ 근로자에 준하여 동일하게 보상(요양·휴업급여 등)

❖ 훈련수당을 받지 않았거나 훈련수당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는 최저임금에 준해서 보상

② 학교안전공제회(고교), 한국교육안전공제회(대학)의 공제급여와 중복 보상되는지?

❖ 학교안전법 및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(교육부)에 따라 현장실습을 주관하는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공제제도는 산재보험급여 제외부분만 보상하므로 중복 보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

*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19조의2, 현장실습생 안전공제 약관 제3장 제9조

참고

산재보험 급여종류 및 내용

| 급여종류 | 지급요건 | 지급수준 및 지급기간 |
|--------|---|---|
| 요양급여 | 산재보험적용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|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될 때까지 보험시설 또는 지정의료기관에서 요양 |
| 휴업급여 |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동안 지급 | 평균임금의 70% 지급 -최고보상기준:1일 214,402원의 70% -최저임금(1일 66,800원) 미달시 최저임금 지급 |
| 상병보상연금 | 2년이상 요양중인 재해자 중 폐질등급 1~3급 해당자에게 지급 | 1급(329일분), 2급(291일분), 3급(257일분), 휴업급여 대신 지급 |
| 장해급여 | 치료 종결 후 신체에 장애가 남아있는 산재근로자에게 장해보상연금 또는 일시금 지급 | 연금 : 1급(329일분)~7급(138일분) 일시금 : 1급(1,474일분)~14급(55일분) ※ 1~3급은 연금으로만 지급(최고 4년분 선급), 4~7급은 연금과 일시금 중 선택(2년분 선급), 8~14급은 일시금으로만 지급 진폐보상연금 : '10.11.21 도입, 기초연금(최저임금 365일분의 60%) + 진폐장해연금(1~3급 월11일분, 5~7급 월6일분, 9~13급 월 2일분) |
| 유족급여 | 업무상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 | 연금 : 급여기초년액 (평균임금× 365)의 52%~67% 일시금 : 평균임금의 1,300일분 진폐유족연금 : '11.11.21 도입, 진폐장해자가 생전에 받던 진폐보상연금 수준과 동일 |
| 간병급여 | 치료종결 후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 | 상시간병 1일당 41,170원 수시간병 1일당 27,450원 |
| 직업재활급여 | 장해1급~12급장해급여자 또는 요양중으로서 장해1급~12급이 명백한 자 미취업자, 다른 훈련 미해당자 | (직업훈련비용 및 훈련수당 금액) 직업훈련비용: 6,000,000원(1인당) 직장복귀지원금: 300,000원~600,000원(월) 직장적응훈련비: 450,000원(월) 재활운동비: 150,000원(월) |
| 장의비 | 업무상 사망에 대하여 실제 장제를 행한 자에게 지급 | (평균임금의 120일분) 최고 15,554,290원, 최저 11,097,760원 |